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배 동 수 의원)

의안 번호	26-91
----------	-------

발의년월일: 2026. 8. 21.

발 의 자: 배동수, 고안경, 장영준,
장정희, 최은하, 김진천,
허디모데, 장덕준, 채종민,
원성혜, 남해석, 백남환
의원(12인)

1. 제안이유

- 마포구는 현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등록한 유산 외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향토유산을 발굴·지정하고 보존·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에 산재한 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전승에 한계가 있음
- 이에 향토유산의 기초조사와 지정·해제, 보존·관리 및 전승·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고, 마포구 고유의 지역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향토유산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

조부터 제3조까지)

나. 향토유산의 발굴·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향토유산의 지정·보존·관리·전승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소유자 등의 신청 및 동의, 위원회 심의를 통한 향토유산의 지정·해제와 지정서 발급, 고시·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향토유산의 관리주체, 보존·관리 및 향토무형유산의 보호·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향토유산의 발굴·조사·보존·전승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라. 입법예고: 2026. 8. 24. ~ 8. 28.(예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거나 역사적·지역적 기반을 둔 향토유산을 발굴·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거나 등록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적 가치가 있어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토유산의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유산과 그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조사)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발굴 및 지정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거나 역사적·지역적 기반을 둔 유산의 소재지 또는 전승지역, 이

력, 소유·관리 또는 전승 관계, 보존 상태 또는 전승 현황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그 전승자 또는 전승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전승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정비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과 그 주변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유산의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역사학·민속학·고고학·건축학·예술학·자연유산·무형유산 등 향토유산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 또는 향토유산의 조사·보존·관리·전승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향토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운영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① 향토유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유자, 관리자, 전승자, 전승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그 전승자 또는 전승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서를 발급받을 소유자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정의 해제)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멸실·훼손 또는 전승의 중단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향토유산이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거나 등록한 유산이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일 또는 등록일에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 해제를 알린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고시 및 통지) ① 구청장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항에 따라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제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향토유산의 관리 주체) ① 향토유산은 그 소유자가 보존·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에 적합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향토유산의 보존·관리) ①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관리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유산의 특성에 따라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향토유산의 명칭, 지정번호, 지정일 및 주요 가치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존·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향토무형유산의 보호·육성) ① 구청장은 향토무형유산의 지속

적인 전승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육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무형유산의 전승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승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승자 또는 전승단체와 협의하여 보호·육성에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사항) 향토유산의 소유자등은 해당 향토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 전승자 또는 전승단체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등의 성명·명칭·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 보관 장소 또는 전승지역이 변경된 경우
5.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향토무형유산의 전승이 중단되거나 전승자의 사망, 전승단체의 해산 등으로 정상적인 전승이 어려워진 경우

제15조(경비 지원) 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발굴·조사·기록 및 학술연구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수리·정비 및 전승
3. 향토유산의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취약성 조사 및 대응
4. 향토유산을 활용한 교육·전시·공연·체험·출판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표창)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발굴·보존·관리·전승 또는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	------	------	-----

1. 지정 신청 대상

구분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			명칭	
소재지	※ 보관 장소 또는 전승지역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수량·면적·규모	
소유자 등	성명 또는 단체명			구분	[] 소유자 [] 관리자 [] 전승자 [] 전승단체
	주 소				
	연락처			전자우편	

2. 신청인

신청인 구분	☐ 소유자 ☐ 관리자 ☐ 전승자 ☐ 전승단체 ☐ 관계 기관·단체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또는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소유자 등과의 관계				

3. 신청 내용

신청 사유	※ 향토적 가치, 지정 필요성 및 긴급성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수집 목적: 향토유산 지정 신청의 접수·조사·심의 및 결과 통지

※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또는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 보유·이용 기간: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필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 접수 및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정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해당하는 경우) 2. 현황사진 3. 위치도·보관 장소 또는 전승지역도 4. 소유·관리·전승 관계 증빙자료 5. 조사보고서·문헌·도면·전승자료 등 가치 입증자료(있을 경우) 6. 그 밖의 증빙자료	수 수 료 없 음

향토유산 현황(사진)

사진 1

사진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지정 동의 대상

구분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	명칭	
소재지	※ 보관 장소 또는 전승지역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수량·면적·규모	

2. 동의자

동의자 구분	[] 소유자 [] 전승자 [] 전승단체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또는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소유자 등과의 관계			

※ 소유자 또는 전승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합니다.

3. 동의 내용

지정 동의	[] 위 대상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건 또는 의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수집 목적: 향토유산 지정 동의의 확인·조사·심의 및 지정 후 관리

※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또는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 보유·이용 기간: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필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정 동의 확인 및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 지정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단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소유 또는 전승 관계 증빙자료(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 생략) 2. 전승단체 대표자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	수 수 료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서

구분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	지정번호	제 호
명칭		소재지	
수량·면적 · 규모		지정일	년 월 일
소유자 등	☐ 소유자 ☐ 관리자 ☐ 전승자 ☐ 전승단체 성명 또는 단체명:		

위 유산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연 번	지정 번호	구분	명칭	소재지 (보관 장소·전승지역)	수량·면적· 규모	소유자 등 (구분/성명 또는 단체명)	지정일	지정서 발급일	수령인 (성명/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 소유자·관리자·전승자 또는 전승단체의 변경, 지정서 재발급 등 변동사항은 비고란에 기록합니다.

【관 계 법 령】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6. 5. 17.] [법률 제2158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10조(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 다. (생략)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 <2023. 9. 14.>

⑤ ~ ⑬ (이하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하 생략)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 2026. 2.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 9. (이하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천연기념물등이 아닌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하 생략)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7.] [법률 제21585호, 2026. 4.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 12. (이하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1항(기초조사)

제4조(기초조사)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발굴 및 지정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거나 역사적·지역적 기반을 둔 유산의 소재지 또는 전승지역, 이력, 소유·관리 또는 전승 관계, 보존 상태 또는 전승 현황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5조제1항(경비지원)

제15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등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발굴·조사·기록 및 학술연구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수리·정비 및 전승
3. 향토유산의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취약성 조사 및 대응
4. 향토유산을 활용한 교육·전시·공연·체험·출판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 최유향
연 락 처	02-3153-8372